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01일

다산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온 *녀	온 *녀 1909-09-09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(신당동)	직권말소 2021-11-01
정 *이	정 *이 1913-01-24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(신당동)	직권말소 2021-11-01
윤 *옥	윤 *옥 1914-02-08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(신당동)	직권말소 2021-11-01
강 *하	강 *하 1915-03-17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(신당동)	직권말소 2021-11-01
김 *례	김 *례 1916-03-03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(신당동)	직권말소 2021-11-01
김 *희	김 *희 1920-07-13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(신당동)	직권말소 2021-11-01